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208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16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208178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백현, 안예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3. 16.

주문

-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8,286,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8,286,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2016. 5. 31.

11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 D은 E, C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23931 대여금)을 신청하여 2019. 4.

15. 'E, C는 연대하여 D에게 49,436,335원 및 그 중 47,744,931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C는 1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9. 6. 26. 확정되었다.

3) D은 2022. 5. 23. 주채무자인 E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으로 2022. 6. 13.

E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보증인 C에 대한 채권도 양도하고, 2022. 8. 3. C에게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C는 2018. 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C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D에 대한 채무 4,700만 원 상당, F조합에 대한 채무 3억 원 상당(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1. 16. 배당표 작성 당시 채권 원금은 320,012,484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 원 상당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임의경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4. 2.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9. 4.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20. 1. 16. 그 경매절차에서 153,981,544원을 배당받았다(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낙찰받아 그 배당금으로 매각대금과 상계하고 2020. 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6호증, 을 3호증,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9. 6. 26. 확정되었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C의 재산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이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보는 것과 같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D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D의 C에 대한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보증채권은 보증인 간의 구상채권의 발생과는 달리 보증인의 보증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채권이고, 이 사건은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처럼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 또는 C가 운영하던 E에 2016. 8. 16.부터 2018. 1. 8.까지 19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2018. 1.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는 D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2016. 8. 16.부터 2017. 5. 15.까지 C에게 차용증이나 별다른 담보 없이 계좌이체로 114,000,000원(E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을 포함하면 124,000,000원이고, 현금으로 주었다는 6,000,000원을 포함하면

130,000,000원이다)을 대여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8. 1. 8.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비로소 19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은 당시 C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 외에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을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153,981,544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48,286,88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8,286,88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286,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지